KOSHA GUIDE

C - 63 - 2012

6. 차수 그라우팅(Grouting)작업 안전조치 사항

6.1 일반사항

- (1) 지층조건을 검토하고 시공 전에 작업계획을 작성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.
- (2) 차수작업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(가) 공사명, 시공장소, 발주처, 설계자 및 시공회사 등을 기록한 공사개요
- (나) 작업배치도, 보강작업의 범위와 사용재료 및 사용량 등
- (다) 공기, 토질 조건, 시공 난이성, 휴일, 계절과 날씨에 따른 공사의 관계를 고려 한 공정표
- (라) 사용하는 장비의 명칭, 형식, 형상, 치수, 성능, 수량 등을 기록한 주요 장비 일 람표
- (마) 공사명, 조사장소, 조사기간, 지하수위, 심도, 토층두께, 각종 토질시험 결과 값이 기입된 토질주상도
- (3) 이 시공에 앞서 현장의 토질특성을 조사하고, 공사 착수 전에 작성한 주입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당해 공사에 대한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입량을 결정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시험 시공하여야 한다.
- (4) 장비의 설치는 현장조건 및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전도 또는 전락되지 않도록 지반을 정리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그라우팅 설비는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고 사용 재료와 세정수 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플랜트 설치 후 주입호스, 장비가동용 동력선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7) 고압 또는 초고압호스의 연결부는 파손으로 인명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작